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손해배상액 산정 시 현금 외 보상 제외 〉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45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손해배상액 산정 시 현금 외 보상 제외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2. 6.
3. 회 부 일 : 2026. 2.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업들이 현금이 아닌 자사 포인트나 쿠폰 지급 등의 보상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배상이라기보다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는 ‘피해구제 노력’의 범위에서 현금 외의 포인트·물품 교환권 등은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제8호 단서, 제39조의2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손해배상액 산정 시 현금 외 보상 제외

- 개정안은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현금 외에 특정 물품이나 용역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재화나 용역의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지급한 부분은 고려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 ③ (생략)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u><단서 신설></u>	8. ----- ----- -. <u>다만, 현금 외에 특정 물품이나 용역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재화나 용역의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지급한 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u>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4</u>

현행	개정안
③ (생략)	<u>항제8호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계하지 아니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현행법 제39조제3항¹⁾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배상액을 정할 때 위법행위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음.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2023. 3. 14., 2026. 3. 10.>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시행일: 2026. 9. 11.] 제39조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상의 내용은 현금, 상품권, 포인트 또는 쿠폰의 지급 등 다양함.

그런데, 현금이 아닌 해당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자사 포인트나 쿠폰 지급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마케팅 수단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와 같이 현금이 아닌 방식의 보상에 대해서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게 되는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일반적으로 현금 보상이 가장 효과적인 보상일 것으로 보인다는 점, 통상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제공되는 혜택과 유사한 방식의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특별한 보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금 외의 보상을 피해구제 노력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기업의 보상이 실질적인 보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들이 이를 실질적인 보상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일 것으로 보이는데, 현금 지원인지 여부만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용도 또는 사용기간 등에 제한이 없는 현금 보상이 가장 효과적인 보상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 외의 방법으로 보상하는 방안의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나,

현금 외 보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현금 보상보다 금전적으로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인별 선호나 만족도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및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현금 외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법원에서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기업의 보상 내용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으로 기능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둘 필요성도 있음.

- 한편, 개정안은 “현금 외에 특정 물품이나 용역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재화나 용역의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지급한 부분”을 배상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교환권이나 상품권 등의 사용처가 해당 기업 상품 등으로만 한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사의 재화나 서비스 구입 또는 자사 플랫폼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로서 피해구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보상방안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비현금성 보상이 일률적으로 ‘피해구제 노력’에서 제외될 경우, 동일 손해에 대한 이중 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기업의 신속한 사후 대응 유인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04